●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-105호

「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「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고시안」을 공고합니다.

> 2024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

「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고시안」 규정변경예고

1. 제정이유

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'24.7.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조사규정 등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

2. 주요 내용

가. 이상거래 조치사항(안 제3조)

- 일반 이용자 앞 거래유의 안내, 보도·풍문 등의 사실여부 조회, 이상거래 이용자의 거래제한·거래중지 또는 이상거래 가상자산의 거래중지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조치사항을 규정

나. 이상거래 신고기준(안 제4조)

- 수사기관 신고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, 수사 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규정
- ※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위·금감원 통보

다. 조사방법(안 제5조)

- 출석요구, 진술서 제출요구 및 장부 등의 제출요구·영치, 사무소 또는 사무소 출입을 통한 업무·장부 등의 조사, 자료제출요구 등을 조사방법으로 규정

라. 조사결과 처리(안 제6조)

-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, 과징금 부과, 과태료 부과, 경고 등의 조치를 할수 있으며, 조치는 병과 및 가중·경감·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

마.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(안 제8조)

-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사항, 이의신청사항, 직권재심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

바. 과징금 · 과태료 부과기준(안 제12조, 제13조)

- 과징금은 [별표 1호]에 따라, 과태료는 [별표 2호]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

사.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(안 제24조)

-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정책·방향 등의 업무협조를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운영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금융혁신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(금융혁신과)

- 전자우편(이메일): wtsim@korea.kr

- 전화: 02-2100-2534

- 팩스: 02-2100-2548

4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www.fsc.go.kr/정책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